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39
----------	-------

발의연월일 : 2024. 4. 18.

발 의 자 : 강민정 · 이탄희 · 양이원영

장경태 · 김승원 · 윤영덕

최기상 · 유정주 · 최혜영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시설·설비의 설치에 관한 컨설팅 제공하도록 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하여금 장애영유아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장애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장애영유아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에 관한 자료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 라.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6).
- 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의 내용에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을 포함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 바. 시도지사 등은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육·보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에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5조의2).

사. 장애영유아의 보호자는 장애영유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장애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 제공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3).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할 때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함(안 제29조).

차.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카. 장애영유아 보육제공 요청의 접수 및 어린이집의 연계 업무는 유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장애영유아”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영유아 또는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법률 제202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후단 중 “장애아”를 “장애영유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시설·설비의 설치에 관한 컨설팅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장애영유아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

책분석

제9조의2제1항 중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을 “영유아의 인권, 아동학대 예방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6에 따른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 현황에 관한 자료

7.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에 관한 자료

제15조 단서 중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로, “제15조의4까지”를 “제15조의4까지 및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제23조의2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증진

제25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육·보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모니터링

제26조제1항 중 “장애아”를 “장애영유아”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 ① 장애영유아

의 보호자는 장애영유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과 어린이집 연계, 제3항에 따른 지원, 제4항에 따른 안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2항 중 “표준보육과정”을 “표준보육과정(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장애아”를 “장애영유아”로 한다.

제44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의3부터 제4호의9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10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5조의6에 따른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4의3.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경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제3호의2의 업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

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의 접수 및 어린이집의 연계 업무

제54조제4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1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장애영유아”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영유아 또는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 5. (생략) 법률 제202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책임) ① ~ ⑤ (생략) <u><신설></u>	2. ~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1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책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 ----- -----

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8. (생략)

② ~ ⑥ (생략)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략)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신 설>

2. ~ 10. (생략)

③ ~ ⑦ (생략)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장애영유아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시설·설비의 설치에 관한 컨설팅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1의2. 장애영유아의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2. ~ 10.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
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
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
·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
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야 한다.

<신설>

1. ~ 5. (생략)

-----영유아의
인권, 아동학대 예방 및 장애영
유아의 보육-----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5조의6에 따른 장애영유
아용 시설·설비의 설치 현황
에 관한 자료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

<u><신 설></u> <u>6. ~ 12. (생 략)</u> ③ ~ ⑤ (생 략)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 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u>비상재해대비시설 및</u> <u>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u>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 부터 <u>제15조의4까지</u>에 따른다. <u><신 설></u>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 육)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	호까지와 같음) 7.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영유 아의 보육 제공에 관한 자료 8. ~ 14. (현행 제6호부터 제1 2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 ----- ----- --<u>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u> <u>텔레비전 및 장애영유아용 시</u> <u>설·설비의 설치</u>----- -----<u>제15</u> <u>조의4까지 및 제15조의6</u>----- ---. <u>제15조의6(장애영유아용 시설·</u> <u>설비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u> <u>·운영하는 자는 장애영유아의</u> <u>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u> <u>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갖추어야 한다.</u>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 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⑤ (생략)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④ (생략)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
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
·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
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

성에 대한 이해 증진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장애영유아 보육의 특수

성에 대한 이해 증진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

-----.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

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육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u>10명</u>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 ⑨ (생략)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u>장애아</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u>· 보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u> <u>· 운영하여야 한다.</u>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u> <u>인력 및 시설·설비 현황 모</u> <u>니터링</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u>12명</u>-----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 ----- ----- ----- -----<u>장애영유아</u>----- ----- ----- ----- -----.
--	---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 및 보육기반 지원) ① 장애영유아의 보호자는 장애영유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영유아의 보육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

<신 설>

제29조(보육과정)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
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유아 보육 제공 요청과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
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과 어
린이집 연계, 제3항에 따른 지
원, 제4항에 따른 안내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어린
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제28조의2제2
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장애영유
아에게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절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보육과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표준보육과정
(장애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표
준보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 ⑤ (생 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⑤ (생 략)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신 설>

3. ~ 4의2. (생 략)

<신 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무상보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장애영
유아-----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5조의6에 따른 장애영유아용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정

<u>4의3. ~ 4의9. (생략)</u> 5. ~ 8. (생략)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u> 1. ~ 3. (생략) <u><신설></u> 4.·5. (생략) ②·③ (생략) 제54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u>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경우</u> <u>4의4. ~ 4의10. (현행 제4호의 3부터 제4호의9까지와 같음)</u> 5. ~ 8.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 ----- ----- ----- ----- ----- -----<u>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제3호의 2의 업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 제공 요청의 접수 및 어린이집의 연계 업무</u>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3의3. (생략) <u><신설></u> 4. ~ 8. (생략)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3의4.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정</u> <u>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에</u> <u>대한 보육 제공 요청을 거절</u> <u>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u> 4. ~ 8. (현행과 같음)
---	--